

환경책임보험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안전사회를 만듭니다!!



Q1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 <표2>의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2 언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2 2016년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미가입시 2016년 7월 1일부터 최대 6개월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Q3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가군은 300억원, 나군은 100억원 (소기업 80억원), 다군은 50억원(소기업 30억원)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4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4 2016년 초에 보험회사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여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표 1> 법 적용대상시설

법 적용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수생태계 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중 합계 용량 3백kl 이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물질 저장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이용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표 2>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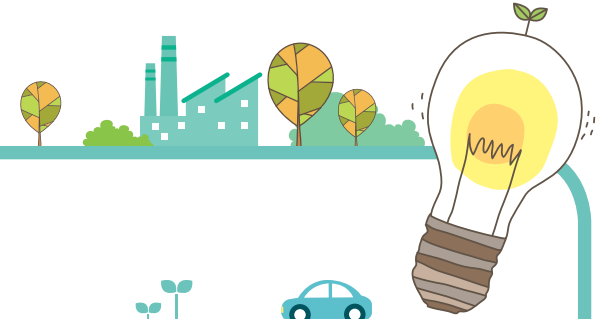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중사업장의 시설 포함)
「수질·수생태계 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중사업장의 시설 포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저장용량 1천kl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중 합계 용량 3백kl 이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물질 저장시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적용 대상 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

※ 뒷면 <표 1> 및 법 제3조 참조



보험 의무가입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의 환경시설

※ 뒷면 <표 2> 및 법 제17조 참조



배상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2천억원 이내로 제한 (배상책임한도 초과피해는 국가가 보장)



무과실 책임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



인과관계 추정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환경시설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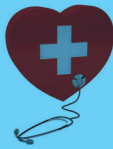
정보청구권

피해입증을 위한 사업자의 환경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사업자 거부 시 환경부장관 명령 가능)



사업자의 책무

- ①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
- ② 피해발생 시 경감 조치
- ③ 환경오염사고 신고
- ④ 도급 신고



구제급여 지급

환경오염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국가가 지급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서비스 제공

환경책임보험
문의처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 ☎ 02-368-4000
<http://www.eilkorea.or.kr>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문의처

환경오염피해통합지원센터 ☎ 02-380-0660
http://env_relief.keiti.re.kr